

## II. 우량림 육성을 위한 종·묘사업 발전방안

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  
교수 이 대 림

### 1. 머리말

- 조림정책은 장기 목재수급계획, 단기 소득증대, 임산물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 등 경제적인 측면과 국토보전, 수원함양, 풍치경관 유지증진 등 공익·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.
- 양묘사업은 조림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림목적에 맞는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목표임
- 그동안 산림녹화와 용재생산을 목적으로 단위면적당 용재생산량이 많은 침엽수 위주의 조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묘를 위한 종자채취 부터 잣나무, 낙엽송 등 침엽수에 치중하였다.
- 그러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유지 등 산림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조림정책 방향도 경제적·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.
- 2030년까지 최소한 350만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고, 지속생산이 가능한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.
  -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엽수림의 비율을 혼효림 포함하여 60% 수준으로 확대
- 산림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경제림조성 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림수종 다양화, 종·묘 국가관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.
  - 종자와 묘목양성, 산지적응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
  - 산림자원조성의 기초인 종자·묘목생산에 있어 시험연구, 행정지도, 제도개선 부진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
- 임목은 한번 식재하면 30~50년 이상 키워야 하므로 유전적 형질이 좋은 종자를 채취

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이를 식재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림정책이라 할 수 있다.

- 산림용 종자는 여러 대에 걸쳐서 유전되고 자연적으로 타가수정에 따라 잡종화되므로 임목의 형질은 종자의 유전적·환경적 인자에 따라 크게 좌우됨
- 우수한 조림용 묘목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전성과 환경요소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모수에서 채종을 하여야 함
- 묘목은 조림지에 이식하여 생장이 평균생장량 이상 왕성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과 형태를 구비하고, 활착이 좋으며 병충해 및 기상적 피해에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우량하고 건전한 묘목으로 키워야 한다.

## 2. 우리나라 종·묘 사업의 현주소

### 가. 우량 종·묘 생산의 법적근거

#### □ 산림법령상의 규정내용

- 산림용 종자(접순, 꺽꽂이순 및 버섯종균 포함) 및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종·묘 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함(산림법 제45조제1항)

※ 조림용 종·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(산림법 시행령 제45조)
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 종·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농업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종·묘 기술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
-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)의 임업분야학과·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·묘 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
-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·묘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
-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
-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 (종자판매업에 한함)

-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·묘생산업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(산림법 제45조제4항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·묘를 구입할 때에는 산림청장이 결정·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함(산림법시행령 제46조의2)
  - 종·묘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·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
-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, 종자공급을 위한 채종원 및 채수포를 조성·확보하여야 함(산림법 제49조)
  - 수형목 :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·삽수 및 종자를 채취 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된 수목
  - 채종원 :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생산·공급 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에 의해 조성된 1세대 채종원
  - 채종림 :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종자를 충족 할 수 없을 때 부족분을 충족 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
  - 채수포 : 우량한 접·삽수를 채취 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(클론 보존원)
  - 클론(clone) : 접·삽목, 취목,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번식된 단일 개체들의 집합체
- 그 외 종·묘의 품질보증표 첨부, 종묘의 검사, 출하금지 또는 소독·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산림법 제47조)

#### □ 산림청 예규상의 규정내용

-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(종묘사업 실시요령 : 예규 제509호 - '04.8.11)
  - 채종림 등 조성관리(채종림·수형목의 지정관리, 채종림·수형목의 지정과 해제, 채종원·채수포의 조성)
  - 산림용 종자관리(종자결실, 예찰조사, 종자채취, 검사, 품질보증표)
  - 산림용 양묘시업·묘목검사 등(묘목생산·검사·포장등)
  - 양묘사업기준, 양묘사업공정
  - 조림용 묘목규격 등

## ≡ 논 단 ═══

### □ 종자산업법상 규정내용

#### ○ 품종보호출원

- 임목종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에 포함될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 발생

#### ○ 품종명칭의 등록

- 임목종자 등을 생산·판매하기 위한 신고품종은 심사등록 하여야 함

#### ○ 심사

- 심사관으로 하여금 품종보호출원, 품종보호 이의신청, 품종 명칭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실시

#### ○ 품종목록의 등재

-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심사

#### ○ 종자의 보증

-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·판매하기 위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자관리사가 보증

#### ○ 종자의 유통

- 종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고 시설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

- 임목종자를 생산·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시료를 첨부 신고하여야 함

- 국내생태계 보호, 자원보존을 위해 종자의 수출·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음

#### - 유통종자의 품질표시

- 종자의 용기·포장에 생산년도, 품종의 명칭, 수량, 발아율 및 발아보증시한, 포장연월, 수입연월 및 수입 등 표시

※ 위와 같이 산에 나무를 심어 키우는 것은 30~50년 이상 장기간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식물로써 유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

- 종자의 중요성과 함께 양묘업자도 일정자격을 갖춘 자만이 양묘할 수 있도록 산림법령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

- 종자의 육성, 증식, 생산, 수출, 수입 등에 있어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임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

## 나. 종자채취 및 양묘사업상황

### 우량 종묘 생산기반 조성 실태

#### ○ 채종원 조성실적

- 유전변이 폭이 넓은 침엽수 위주의 용재수로 수형목을 선발, 접목묘로 조성(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)
- 조성실적('68~2003) : 803ha(59개 수종 : 침엽수종 87%)
  - '02까지: 778ha(57개 수종) -침엽수 위주 조성(소나무, 해송등)
  - 2003조성: 25ha(2개수종)-활엽수(고로쇠나무, 함박꽃나무 등)
- ※ 최근 조림수종 다양화와 활엽수조림 확대정책 및 조림가능 수종이 78개 수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엽수 채종원 신규 조성중

#### ○ 채종림 지정상황

- 2003말 현재 채종림 면적 : 1,023ha(531천본)
  - 민유림 : 378ha(66천본) · 국유림 : 645ha(435천본)
- ※ 침엽수 채종림이 876ha로서 86% 차지하고 있으며, 잣나무 채종림이 754ha(74%)로 가장 많음

#### ○ 채수포 조성상황

- 2003년말 현재 조성면적: 18ha(8천본)-밤나무(17.9ha)가 대부분임

〈우량종묘 생산기반조성 현황〉

(단위 : ha)

| 구 분 | 합계  |       |     | 채종원 |     |     | 채종림 |       |     | 채수포 |    |     |
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    | 수종수 | 면적    | %   | 수종수 | 면적  | %   | 수종수 | 면적    | %   | 수종수 | 면적 | %   |
| 합 계 | 75  | 1,844 | 100 | 59  | 803 | 100 | 11  | 1,023 | 100 | 5   | 18 | 100 |
| 침엽수 | 17  | 1,577 | 86  | 15  | 699 | 87  | 2   | 878   | 86  | -   | -  | -   |
| 활엽수 | 58  | 267   | 14  | 44  | 104 | 13  | 9   | 145   | 14  | 5   | 18 | 100 |

### 종자채취

- 종자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원천으로서 유전적 우수성 및 건전성, 합리적인 생산 및 취급과정이 종자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, 산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량한 종자를 파종하여 육묘관리 되어야 함

## ■ 논 단

- 종자공급원은 생산되는 종자의 우수정도에 따라 채종원·채종림·채종임분산 종자로 분류
- 제4차 기본계획상의 조림계획량을 기준으로 양묘시업상황과 종자결실 상황을 검토하여 침엽수 38%, 활엽수 62%로 활엽수종의 종자채취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음
- 산림용 종자 채취는 채종원, 채종림, 채종임분에서 채취 확보
  - 채종원산 종자 :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접 채취
  - 채종림·채종임분 종자 : 도 산림환경연구소·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종자채취자를 지정 채취
- ※ 채종임분 :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한 우량한 임분으로서 채종원·채종림의 종자결실량 부족으로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
- 종자 채취상황('04년도 파종용 종자 확보 실적)
  - 대부분의 종자를 채종림과 채종임분에서 채취 확보(91%)

〈채취장소별 확보 비율〉

| 구 분   | 확 보 량     |      | 생산가능본수   |      | 조림가능 면적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합 계   | 123,512kg | 100% | 74,292천본 | 100% | 24,793ha | 100% |
| 채 종 원 | 11,169    | 9    | 15,038   | 20   | 5,012    | 20   |
| 채 종 립 | 4,818     | 4    | 1,565    | 2    | 2,522    | 2    |
| 채종임분등 | 107,525   | 87   | 57,689   | 78   | 19,259   | 78   |

- 채종림, 채종임분에 대한 종자채취상황
  - 경기도에서는 채종림에 대하여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직영채취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산림조합, 양묘업자를 지정하여 채취

### □ 양묘시업 상황

- 양묘시업은 형질이 우량한 종자를 확보하고
  - 발아촉진처리 등으로 발아율을 높이고 발아된 어린묘를 튼튼한 묘목으로 키우기 위하여
  -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한 단위면적당 파종량, 약제살포, 제초, 속으기, 1m<sup>2</sup>당 키울 본수 등을 규정한 사업기준에 따라 사업

- 묘목생산은 종·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수종별, 묘령별 생산량을 지정하여 생산
  - 경제수 조림용 : 60%, 수원함양 및 큰나무조림용 : 0%
  - ※ 일반산주나 개인 등이 자체생산하는 묘목은 판매를 할 수 없음
- 2003년도 조림용 묘목 확보를 위한 양묘시업상황
  - 생산량 : 32수종, 53,902천본
  - 생산주체별 시업상황
    - 한국양묘협회에서 대부분(84%)의 묘목을 생산

#### ※생산 주체별 묘목 생산 실적

(단위 : 천본)

| 합 계              | 한국양묘<br>협 회     | 산림조합          | 도산림환경<br>연 구 소 | 지방산림<br>관 리 청  | 기타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53,902<br>(100%) | 45,526<br>(84%) | 1,313<br>(2%) | 290<br>(1%)    | 6,773<br>(13%) | -  |

#### 다. 시설양묘 추진 실태

##### 용기묘 개요

- 세계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 고위도 지방에서 양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달하였음
-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용기묘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.
  - ※ 캐나다 브리티시주 95%, 필란드 90%, 멕시코 80%, 이스라엘 99%

##### 우리나라 용기묘 생산 추진배경

- 1996년도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 중 송이생산 임지 소나무 복원 조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나무 용기묘 생산 착수
- 포지양묘에서 생산되는 상수리나무 묘목은 직근성으로 세근 발달이 좋지않음에도 굴 취시에 단근을 하여 식재하므로 활착이 불량하고 생육이 부진한데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
-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 묘목의 품질과 생산량이 좌우 됨.
- 따라서 뿌리의 손상이 없고 품질이 좋은 묘목의 대량생산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.

## ■ 논 단

### □ 소나무 용기묘 생산 실태

- 대규모 생산은 1997년에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복구 조림용 묘목(1-0)을 육묘하여 조림하였고.
- 또한 2000년도 동해안 산불피해지 중 송이생산지 조기복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채취한 종자로 2001년부터 용기묘를 생산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.
- 2004년도에는 일반지역의 조림에 필요한 2년생 묘목 생산을 위하여 봄철에 시업을 하여 육묘 중에 있다.

### □ 상수리나무 용기묘 생산 실태

- 2002년부터 산림청에서 비닐온실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평균 16동을 설치하여 묘목을 생산 조림을 실시 중에 있다.
- 2004년도에는 24혈 용기를 개발하여 신갈나무, 굴참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수종을 육묘하므로서 육묘수종 다양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.

## 3. 종·묘 사업 추진의 문제점

### 가. 우량종묘 생산기반 조성

- 조림가능 수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우량종자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
  - 현재 조림가능수종 78개 수종중 19개 수종은 채종원 조성 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
    - 종자채취는 채종원 조성후 10~30년이 지나야 종자채취 가능
  - '03년도 채종원산 종자 채취량(18,030kg)의 91%가 잣나무 종자
- 채종원 조성을 지금까지 침엽수 위주로 조성(87%)하고 활엽수 채종원 조성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 활엽수 채종원 확보가 시급함
  - 활엽수종의 채종원을 2007년까지 조성 완료한다 해도 종자채취는 2020~2040년 경에 가능함
- 채종림도 잣나무, 낙엽송 등 침엽수 위주(86%)로 지정되어 활엽수종의 우량종자 확보에 어려운 현실임

- 활엽수종 조림 확대를 위해서는 우량종자 확보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활엽수종의 종자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이 취약한 실정임
-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만으로는 조림용 묘목 양성에 필요한 종자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일반지역 산림중 우량림을 대상으로 채종임분을 선정 채취하고 있어 불량종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

#### 나. 종자채취

- 임목종자의 우열은 수년내에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불량종자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의 품질이 철저히 보증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나
  - 현재는 불량한 종자에서 생산된 묘목을 조림하여 수십년이 지난 후 불량종자라고 판정될 경우에도
  - 종자 설명제 등의 미확립으로 방지대책이 없음
- 채종원산 종자는 검증된 종자로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영 채취하기 때문에 종자국가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현재는 종자 채취량이 소량이고 침엽수종 종자만 생산
  - '03채종원산 종자 채취량 : 18,030kg(소나무, 잣나무, 해송)
    - ※ 채종원은 형질이 우수한 수형목에서 접수를 채취하여 접목묘를 양성 조성하고 있어, 일반종자로 양성한 묘목을 식재하여 키운 임목보다 15~25%의 개량효과가 있다고 함
- 채종림은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가꾼 임분이 아닌 일반산림지역의 목재생산을 위한 우량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종자결실량도 적으며 나무의 수고가 높아 채취가 곤란하고 인력과 예산이 과다소요 됨
- 대부분(91%)의 종자를 채종림과 채종임분을 대상으로 양묘업자, 산림조합을 지정하여 채취토록 하고 있어 불량종자 유입 방지기능이 취약
  - 종자채취 현장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통제기능이 약함
  - 종자채취자로 지정된 자도 인부를 사역, 몇일간 채취함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되 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음
    - ※ 개인이 채취한 종자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검사토록 하고 있으나 채취지역 등 을 확인하기는 곤란한 실정 임

## ☰ 논 단

-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산림수종 종자채취에 필요한 구과채취, 탈각, 정선, 포장 등에 대한 공정이 없고, 연구결과도 미흡하여 종자가격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음
  - 수종별 종자의 결실주기, 풍작, 평작, 흉작 등에 따른 공정이 마련되지 못함

## 다. 양묘사업

- 현재 조림면적이 가장 많은 경제수 조림용 묘목의 대부분은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생산하여 국가에서 매수 수급하는 체제로 운영되므로 묘목생산자들의 우량종자에 대한 유전적 인자나 환경인자 등 인식이 낮아, 출처가 불확실한 종자를 채취·확보하여 묘목을 생산 할 경우, 묘목형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목재생산량이 적어지는 등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
- 양묘사업후 생산가능량을 조사하여 규격미달묘는 열세목으로서 폐기처분해야 함에도 잣나무의 경우에는 이행도가 낮음
- 중앙부서에서 양묘사업상황, 묘목검사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행정력 부족으로 현장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
  - 수종별, 묘령별로 단위면적당( $m^2$ ) 시업본수 확인, 규격묘 생산가능 판단 등 필요
- 78개 조림확대가능 수종에 대한 종묘사업실시요령 중 양묘사업기준 일람표에는 상당 수종에 대하여 시비, 제초 등 양묘사업기준이 미비함
  - 양묘사업기준에 의한 양묘가능수종은 53개 수종만 가능하고 조경수종 등 25개 수종에 대하여는 종자채취, 양묘사업공정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양묘사업기준에 의한 묘목생산이나 묘목가격 사정에 애로가 많은 실정임
- 경제수조림용 묘목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여 현물 보조하므로 묘목생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,
- 행자부 감사결과 정부지정 묘목은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비지정 묘목은 불가능 하므로 안정적 묘목 수급에 차질 우려

## 라. 시설양묘 용기묘 생산 추진

- 시설양묘의 목적은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우량 건전묘를 대량 생산하는 것임.

- 2004년도 기준 했을때 생산수량이 조림면적의 9%에 불과하지만 비닐온실설치 5개년계획에 따라 비닐온실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음.
  - 용기묘 조림사업 년차별 확대계획
  - 용기묘 생산수종 다양화 계획 등
- 육묘용기 개발 부진 및 묘목생산자 사용 미흡
  - 현재 사용 용기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개발한 4종에 불과하여 육묘수종 다양화가 곤란
  - '03년에 농특과제로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 '04년에 보급한 24혈용기에 대하여 일부 생산자 사용 기피
- 시설양묘에서 우량한 용기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지양묘 보다 자본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나 대부분의 육묘자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.
  - 용기묘 생산시설 설치 1인당 적정규모
  - 묘목생산 기술 습득 부족 등으로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묘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짐.
    - (시업기준 미준수 등이 원인 임)
- 또한 용기묘를 식재하는 산림소유자들이 실생묘보다 규격이 작은 묘목의 식재를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시·군에서는 용기묘 식재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.
  - 상수리나무 용기묘 수급 잠정규격('02~'03간장 15cm) 적용
    - 정상 묘목 근원경 3mm, 간장22~25cm
  - 동해안산불피해복구용 소나무 묘목은 5개월 육묘한 묘목(간장 9cm)을 수급
- 용기묘의 우수성 및 필요성 홍보부족으로 산림소유자의 호응도가 낮음
  - 용기묘는 형성된 분상태로 식재하므로 건조 피해를 받지 않아 식재 후 활착율이 100% 임
  - 뿌리발달이 좋아 생육이 실생묘보다 우수함
  - 산불피해지 등 식재조림이 어려운 지역에 적합 등

### 3. 종 · 묘 사업의 발전방안

#### 가.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

- 주요조림수종에 대한 채종림지정과 채종원조성을 조기에 확대
  - 2007 까지 73개 조림수종에 대한 채종원 조성 완료 필요
  - 2040년에 채종원산 종자 100% 공급 목표 달성
- 산림식물 유전자원 보전, 신품종 개발 보호, OECD종자 품질 규격 등과 연계하여 산림용 종자의 채취 · 검사 · 저장 공급기능을 점진적으로 체계화
- 종자채취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 시 · 도, 산림환경연구소 등에서 직영채취 판매제도 확대 추진('03년 35% →'08년 80%)

#### 나. 종자 및 묘목실명제 도입

##### 국가 및 지자체 채종종자 관리

- 채종원, 채종림, 채종임분 등에서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는 채취장소, 채취자, 검사자, 양묘자 등의 내용을 실명으로 대장화 관리
  - D.B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적 관리
    - 채종원 종자 :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
    - 채종림, 채종임분 : 시 · 도(산림부서), 지방산림관리청
- 종자유통체계 개선 및 양묘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여 불량종자 사용을 방지하고 우량종자 사용자 인센티브 부여
  - 채종원산 종자 사용시 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평가기준표상의 평가항목에 반영 가점 부여

##### 채종원산 종자 등 종자산지에 따른 묘목가격 차등화

- 채종원산, 채종림산, 채종임분 종자가격 및 생산묘목가격을 차등화 하여 우량종자 사용 촉진
  - 묘목가격 사정시 차등 적용(채종원산1, 채종림산0.5등)

### □ 불량종자 사용 묘목생산자 제재 조치

- 출처불명의 종자 및 불량종자로 묘목을 생산한 종묘생산 등록업자는 지정생산량 축소 등의 조치
  - 조림용 묘목 대행 생산자 평가기준표 평가항목상 감점
- 불량종자 사용 및 묘목생산에 따른 제재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생산에서 제외

### 다. 양묘시업 개선

- 양묘시업은 산에 심을 나무를 키우는 것으로 산에 심었을 때 활착과 생육이 양호하도록 일정기준의 우량묘목이 생산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78개 조림권장수종에 대한 시업기준과 공정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함
- 국립산림과학원의 종자·양묘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종자채취를 위한 구파채취, 탈각정선 등에 대한 공정이 모든 수종별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
- 경제수 및 수원함양조림용 묘목 대부분을 한국양묘협회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실제로 묘목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투자내역 자료를 기록 제시하여 양묘시업기술 제고
  - 지정 생산자들은 종자의 산지, 파종·양묘장소, 양묘장 및 묘목수급자 식재지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조림의 질 향상에 기여도록 유도

### 라. 산림사업용 묘목의 대행생산자 지정제도 개선

- 현행 조림용 묘목 지정생산 제도는 안정적인 묘목 확보로 국가조림계획이 차질없이 추진하는 장점은 있으나, 경제수 조림용 대부분의 묘목을 한국양묘협회 회원에게만 일반경쟁 없이 지정생산하고 있다는 행자부 종합감사의 지적 등으로 개선 필요
  - 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평가기준표에 의한 일정 점수 이상 득점자에게 자격 부여
    - 지정량은 수종별 생산실적을 감안 도지사가 결정
  - 현재 6개 항목인 평가항목에 우량종자 사용등 항목 추가
    - 채종원산, 채종림산, 채종임분산 종자 차등 점수 적용
    - 용기묘 생산 수급 실적 항목 추가 및 점수 적용

## 논 단

- 평가기준표 점수에 의거 지정하되 지정비율 상향조정
  - 경제수 조림용 묘목 : 60% → 80% 이상
  - 수원함양 조림용 묘목 : 0% → 80% 이상
  - 큰나무공익 조림용 묘목 : 0% → 50% 이상
- 점진적으로는 평가기준에 따른 일정 점수이상 득점자에게 일반경쟁 추진
  - 평가기준표 득점(90점, 80점, 70점등)에 따른 제한경쟁

## 마. 시설양묘 용기묘 생산 활성화

### □ 시설양묘 시설의 자동화

- 현재 사용하는 상수리나무 용기묘 생산용 비닐온실은 준자동 시설로서 부분적으로 온실을 제어하므로 양묘자의 경험으로 생육환경을 조절하고 있어 상황판단을 잘못할 경우 고온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자동시설로 전환하여야 함
  - 상토조제, 파종, 관수, 비료주기, 환기시설 등
- 따라서 금후에 시설하는 비닐온실의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, 기존온실은 양묘자가 개선토록 권장
  - 자동온실 설치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시설비용 산출
  - 준자동 시설비(1동당) 4천만원 → 자동시설비로 인상

### □ 용기묘 생산자 기술교육 실시

- 용기묘 생산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후 생육단계별로 현장 지도
  - 국립산림과학원,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빙
- 일정 주기별로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육묘상황을 확인 지도
  - 온실설치, 자재선택 및 파종, 시비 등 작업단계별 지도
- 육묘자재는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우량묘목생산 가능
- '04년도에 보급한 24혈 용기 사용 육묘기술 집중 지도

□ 용기묘 생산 행정지도 및 묘목검사 강화

- 행정기관(중앙,지자체) 및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를 실시하여 우량 묘목 생산 유도
- 묘목 출하시 묘목규격에 의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, 규격 미달묘 및 나선형 뿌리 발생묘는 반드시 소각 폐기
  - 묘목검사는 도청 양묘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실시
  - 산림청에서는 도별로 표본검사 실시 등 지도감독 강화
- ※ '05년부터 시업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시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육묘자가 생산한 묘목은 반드시 지정 수급에서 제외

**바. 용기육묘 생산 수종 다양화**

□ 양묘시업 측면

- 포지양묘가 어려운 주요 조림수종 중 면적이 많은 수종부터 확대하되 점진적으로 잣나무 등 대묘 육묘 실시

□ 육묘용기 개발

- 조림 수종 다양화에 따른 육묘용기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
  - 소나무·참나무류 →백합, 후박, 헛개등 특용수, 잣나무대묘
  - 용기개발은 중앙(산림청)에서 용역 등으로 추진

□ 조림 측면

- 용기묘 시범조림지를 선정하고 활착 및 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·기록을 유지함으로서 용기묘가 포지양묘에서 생산된 일반묘보다 생육이 우수함을 증명
- 시범조림지 생육상황을 산주 및 임업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용기묘 선호도가 증가되어야 함
  - 각 도별 수종별로 1개소 이상 시범조림지 선정
    - 실생묘 조림지 비교구를 설치하여 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록 유지 및 홍보 실시
  - 용기묘 식재 전용 식재도구가 없어 용기묘 식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재도구를 개발하여 보급이 필요 함

## 5. 맷는말

- 인공조림의 목적은 동일한 크기와 동일 품질의 목재를 한 장소에서 일시에 대량생산하기위한 것임
- 우량목재의 생산은 우량종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종자채취 장소 지정부터 종자관리가 중요 함
- 채종원산 종자가 100% 공급될때 까지 채종림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, 조사하여 지역별로 우량림을 선정하고
  - 종자가 많이 열릴 수 있는 시업법을 개발하여 관리하며
  - 지역 채종림에서 생산된 종자로 양묘된 묘목을 그 지역에 식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
- 종자는 우량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육묘기술이 부족하면 좋은 묘목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산림용 묘목생산자들의 기술력 축적이 필요
- 2004년도 현재까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종자실명제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불명의 종자에 의한 묘목생산이 없다고 부인 할 수 없는 실정임
- 농촌인력 감소 및 노동력 질저하 등으로 포지양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량묘목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양묘에 의한 용기묘 생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
- 결론적으로
  - 종자실명제 정착과
  - 시설양묘의 확대 및 시설현대화
  - 용기묘 육묘기술 습득 및 시업기준 준수
  - 지정양묘제 개선 정착이 종묘사업 발전방안의 열쇠임

&lt;참고 1&gt;

## 채종원 조성 현황

&lt;2003.12.31. 현재&gt;

| 수 종         | 조 성 연 도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| 계       | 1968~<br>1983 | 1992~<br>1997 | 1998 | 1999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
| 합 계(59종)    | ha      | ha            | ha            | ha   | ha   | ha   | ha   | ha   | ha   |
|             | 803.0   | 669.5         | 24.5          | 14.2 | 12.1 | 15.1 | 23.3 | 19.5 | 24.8 |
| 침엽수 소계(15종) | 698.9   | 661.5         | 6.0           | 9.2  | 1.0  | 0.4  | 14.8 | -    | 6.0  |
| 소나무         | 99.0    | 99.0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잣나무         | 93.5    | 93.5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해송          | 24.5    | 22.0          | -             | 2.5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전나무         | 12.0    | 10.0          | -             | 2.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낙엽송         | 272.0   | 272.0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리기테다소나무     | 75.1    | 70.0          | -             | 1.5  | -    | -    | 1.6  | -    | 2.0  |
| 테다소나무       | 5.4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5.4  | -    | -    |
| 리기다         | 25.0    | 25.0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삼나무         | 30.0    | 30.0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편백          | 48.0    | 40.0          | 6.0           | 2.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구상나무        | 0.5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0.5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비자나무        | 3.5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1.0  | 0.5  | -    | -    | -    | 2.0  |
| 은행나무        | 1.4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0.2  | -    | 0.4  | 0.8  | -    | -    |
| 스트로브잣나무     | 6.0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4.0  | -    | 2.0  |
| 독일가문비나무     | 3.0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3.0  | -    | -    |
| 활엽수 소계(44종) | 104.1   | 8.0           | 18.5          | 5.0  | 11.1 | 14.7 | 8.5  | 19.5 | 18.8 |
| 가래나무        | 2.4     | 1.4           | 1.0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거제수나무       | 3.7     | 2.7           | 1.0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박달나무        | 1.5     | -             | 1.5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물오리나무       | 3.1     | 3.1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피나무류        | 1.2     | 0.2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| -    | 0.5  | -    | 0.5  | -    |
| 상수리나무       | 9.0     | 0.6           | 5.0           | -    | 1.2  | -    | 0.2  | -    | 2.0  |
| 굴참나무        | 4.3     | -             | 1.5           | -    | 0.3  | -    | -    | 1.5  | 1.0  |
| 졸참나무        | 3.4     | -             | 1.5           | 0.2  | -    | -    | 0.1  | 1.6  | -    |
| 물푸레나무       | 4.0     | -             | 4.0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들메나무        | 2.0     | -             | 2.0  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
| 수종      | 조성연도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| 계    | 1968~1983 | 1992~1997 | 1998 | 1999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
| 느티나무    | ha   | ha        | ha        | ha   | ha   | ha   | ha   | ha   | ha   |
|         | 1.4  | -         | 1.0       | 0.4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가시나무류   | 2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2.0  | -    | 0.5  | -    | -    |
| 백합나무    | 10.0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1.0  | 5.0  | 4.0  |
| 밤나무     | 4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1.5  | 1.5  | -    | -    | 1.0  |
| 호도나무    | 1.8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0.9  | 0.9  | -    | -    | -    |
| 마가목     | 2.2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0.2  | -    | -    | 2.0  |
| 멀구슬나무   | 0.7  | -         | -         | 0.7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음나무     | 2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1.0  | 0.5  | -    | 1.0  |
| 옻나무     | 3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1.0  | 1.5  | 0.5  | -    | -    |
| 헛개나무    | 3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3.5  | -    | -    | -    |
| 후박나무    | 1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1.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흑오미자    | 1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0.5  | 1.0  | -    | -    | -    |
| 황벽나무    | 1.4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0.4  | -    | -    | -    | 1.0  |
| 황칠나무    | 1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1.0  | -    | 0.5  | -    | -    |
| 광나무     | 0.2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0.2  | -    | -    | -    |
| 사스레피나무  | 0.3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0.3  | -    | -    |
| 때죽나무    | 0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0.5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가중나무    | 1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1.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모감주나무   | 2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1.0  | -    | 1.0  | -    |
| 벗나무     | 7.7  | -         | -         | 1.0  | -    | 2.2  | 1.0  | 1.5  | 2.0  |
| 이나무     | 1.2  | -         | -         | 1.2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이팝나무    | 1.3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0.2  | 1.1  | -    | -    |
| 소사나무    | 3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1.0  | 1.0  | 1.0  | -    |
| 참죽나무    | 1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1.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
| 충충나무    | 2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0.3  | -    | 0.2  | -    | 1.5  |
| 두릅나무    | 0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0.5  | -    | -    |
| 가시오갈피나무 | 0.3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0.1  | 0.1  | 0.1  |
| 산딸나무    | 2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1.0  | 1.0  | 0.5  |
| 루브라참나무  | 3.1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3.1  | -    |
| 펜돌라자작나무 | 2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2.5  | -    |
| 야광나무    | 0.3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0.3  | -    |
| 망개나무    | 0.6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0.4  | 0.2  |
| 함박꽃나무   | 1.0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.0  |
| 고로쇠나무   | 1.5  | -         | -     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.5  |

〈참고 2〉

## 채종원산 종자생산 내역

(단위 : kg)

| 수 종       | 계                | '76<br>~'94     | '95           | '96           | '97           | '98         | '99           | '00             | '01            | '02        | '03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계         | 108,467<br>(403) | 22,146<br>(100) | 4,226<br>(70) | 1,888<br>(20) | 9,105<br>(13) | 13,251<br>- | 2,909<br>(30) | 21,058<br>(150) | 10,837<br>(20) | 5,017<br>- | 18,030<br>- |
| 소 나 무     | 1,908            | 307             | 20            | 223           | 30            | 50          | 18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| 90         | 1,080       |
| 해 송       | 2,039            | 1,102           | 53            | 12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101         | 75            | 216             | 42             | 118        | 320         |
| 리기다 소나무   | 1,082            | 876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67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14          | 38            | 33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20         | 34          |
| 리기테다소나무   | 4,479            | 3,387           | 160           | 221           | 168           | 110         | 110           | 215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28         | 73          |
| 일본 잎갈나무   | 871              | 293             | 336           | 15            | 23            | 4           | -             | 127             | 23             | 50         | -           |
| 잣 나 무     | 92,468           | 14,079          | 3,485         | 1,290         | 8,770         | 12,944      | 2,560         | 20,110          | 8,230          | 4,610      | 16,390      |
| 삼 나 무     | 1,688            | 968             | 74            | 24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20          | 39            | 21              | 400            | 43         | 99          |
| 편 백       | 3,298            | 924             | 28            | 16            | 86            | 8           | 39            | 34              | 2,100          | 29         | 34          |
| 자 작 나 무 류 | 450<br>(403)     | 116<br>(100)    | 70<br>(70)    | 20<br>(20)    | 13<br>(13)    | -           | 30<br>(30)    | 181<br>(150)    | 20<br>(20)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|
| 오 리 나 무   | 27               | 16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4          | -           |
| 가 래 나 무   | 118              | 78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32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8          | -           |
| 물 푸 레 나 무 | 2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|
| 전 나 무     | 15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15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|
| 스트로브잣나무   | 5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    |
| 거 제 수 나 무 | 5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5          | -           |
| 독일가문비나무   | 2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2          | -           |
| 화 백       | 10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10         | -           |

※ ( ) 는 펜돌라 자작나무임

■ 논 단 ■

〈참고 3〉

채종림 현황(기관별·수종별)

○ 기관별

(단위 : ha, 본)

| 기관별  | 2002 |          |         | 2003 |          |         | 증△감 |  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     | 개소   | 면적       | 본수      | 개소   | 면적       | 본수      | 개소  | 면적      | 본수       |
| 합 계  | 107  | 1,222.95 | 636,044 | 80   | 1,023.45 | 530,423 | △27 | △199.50 | △105,621 |
| 시·도계 | 42   | 428.83   | 120,328 | 34   | 378.33   | 65,771  | △8  | △50.50  | △25,232  |
| 경기   | 13   | 299.93   | 64,591  | 15   | 299.93   | 64,591  | 2   | 6.00    | 1,180    |
| 강원   | 2    | 15.4     | 6,763   | 2    | 15.4     | 6,763   | -   | -       | -        |
| 충북   | 4    | 24.3     | 12,423  | -    | -        | -       | △4  | △24.30  | △12,423  |
| 충남   | 7    | 21.0     | 9,472   | 8    | 24.0     | 10,552  | 1   | 3.00    | 1,080    |
| 전북   | 5    | 10.0     | 6,630   | 4    | 8.0      | 6,130   | △1  | △2.00   | △500     |
| 전남   | 6    | 33.7     | 14,417  | 1    | 2.0      | 800     | △5  | △31.70  | △13,617  |
| 경북   | 2    | 17.0     | 2,860   | 2    | 17.0     | 2,860   | -   | -       | -        |
| 경남   | 3    | 7.5      | 3,172   | 2    | 6.0      | 2,220   | △1  | △1.50   | △952     |
| 관리청계 | 65   | 794.12   | 515,716 | 46   | 645.12   | 435,327 | △19 | △149    | △80,389  |
| 북부   | 22   | 489.39   | 300,154 | 17   | 464.67   | 289,695 | △5  | △24.72  | △10,459  |
| 동부   | 20   | 136.83   | 109,803 | 15   | 112.55   | 100,474 | △5  | △24.28  | △9,329   |
| 남부   | 4    | 12.0     | 17,420  | 3    | 9.0      | 10,520  | △1  | △3.00   | △6,900   |
| 중부   | 4    | 58.0     | 43,721  | 1    | 5.0      | 1,620   | △3  | △53.00  | △42,101  |
| 서부   | 15   | 97.9     | 44,618  | 10   | 53.9     | 33,018  | △5  | △44.00  | △11,600  |

## ○ 수종별(국유림+민유림)

(단위 : ha, 본)

| 기 관 별 | 2002     |         | 2003     |         | 증△감     |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| 면적       | 본수      | 면적       | 본수      | 면적      | 본수       |
| 합 계   | 1,222.95 | 636,044 | 1,023.45 | 530,423 | △199.50 | △105,621 |
| 잣 나 무 | 787.35   | 484,877 | 753.55   | 474,155 | △33.80  | △10,722  |
| 낙엽송   | 121.50   | 76,810  | -        | -       | △121.50 | △76,810  |
| 전 나 무 | 124.00   | 8,475   | 124.00   | 8,475   | -       | -        |
| 독일가문비 | 9.00     | 1,940   | -        | -       | △9.00   | △1,940   |
| 편 백   | 8.20     | 3,619   | -        | -       | △8.20   | △3,619   |
| 상 수 리 | 43.00    | 18,630  | 28.00    | 11,310  | △15.00  | △7,320   |
| 굴참나무  | 38.00    | 13,700  | 20.00    | 7,730   | △18.00  | △5,970   |
| 자작나무  | 31.40    | 6,192   | 31.40    | 6,192   | -       | -        |
| 줄참나무  | 8.00     | 2,600   | 17.00    | 5,520   | 9.00    | 2,920    |
| 신갈나무  | 29.00    | 12,140  | 19.00    | 8,520   | △10.00  | △3,620   |
| 박달나무  | 10.00    | 3,270   | 17.00    | 4,760   | 7.00    | 1,490    |
| 거제수   | 12.00    | 3,447   | 12.00    | 3,447   | -       | -        |
| 총총나무  | 1.00     | 300     | -        | -       | △1.00   | △300     |
| 헛개나무  | 0.50     | 44      | 0.50     | 44      | -       | -        |
| 느티나무  | -        | -       | 1.00     | 270     | 1.00    | 270      |

## ○ 수종별(민유림)

(단위 : ha, 본)

| 기관별  | 2002 |        |         | 2003 |        |        | 증△감 |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| 개소   | 면적     | 본수      | 개소   | 면적     | 본수     | 개소  | 면적     | 본수      |
| 합 계  | 42   | 428.83 | 120,328 | 34   | 378.33 | 95,096 | △8  | △50.50 | △25,232 |
| 잣나무  | 17   | 316.63 | 74,956  | 16   | 315.33 | 74,486 | △1  | △1.30  | △470    |
| 낙엽송  | 3    | 23.00  | 11,953  | -    | -      | -      | △3  | △23.00 | △11,953 |
| 전나무  | 3    | 19.00  | 3,290   | 3    | 19.00  | 3,290  | -   | -      | -       |
| 편백   | 2    | 8.20   | 3,619   | -    | -      | -      | △2  | △8.20  | △3,619  |
| 상수리  | 12   | 38.00  | 17,010  | 11   | 23.00  | 9,690  | △1  | △15.00 | △7,320  |
| 굴참나무 | 3    | 9.00   | 3,050   | -    | -      | -      | △3  | △9.00  | △3,050  |
| 자작나무 | 1    | 10.00  | 4,600   | 1    | 10.00  | 4,600  | -   | -      | -       |
| 신갈나무 | 1    | 5.00   | 1,850   | 1    | 5.00   | 1,850  | -   | -      | -       |
| 박달나무 | -    | -      | -       | 1    | 5.00   | 910    | 1   | 5.00   | 910     |
| 느티나무 | -    | -      | -       | 1    | 1.00   | 270    | 1   | 1.00   | 270     |

## ≡논 단 ≡

〈참고 4〉

### 수형목 현황

#### ○ 기관별

(단위 : 본)

| 구 분     | 2002 | 2003 | 증△감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합 계     | 694  | 403  | △291 |
| 시 · 도 계 | 410  | 188  | △222 |
| 부 산     | 1    | 1    | -    |
| 경 기     | 48   | 3    | △45  |
| 강 원     | 44   | 34   | △10  |
| 충 북     | 43   | 31   | △12  |
| 충 남     | 39   | 12   | △27  |
| 전 북     | 24   | 13   | △11  |
| 전 남     | 77   | 27   | △50  |
| 경 북     | 81   | 50   | △31  |
| 경 남     | 53   | 17   | △36  |
| 관리청 계   | 284  | 215  | △69  |
| 임 연     | -    | 5    | 5    |
| 북 부     | 188  | 25   | △32  |
| 동 부     | 43   | 156  | △18  |
| 중 부     | -    | 3    | 3    |
| 서 부     | 53   | 26   | △27  |

## o 수종별(국유림+민유림)

(단위 : 본)

| 구 분   | 2002 | 2003 | 증△감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합 계   | 694  | 403  | △291 |
| 가래나무  | 97   | 82   | △15  |
| 박달나무  | 50   | 50   | -    |
| 물오리나무 | 1    | -    | △1   |
| 피나무류  | 40   | 40   |      |
| 물푸레나무 | 1    | -    | △1   |
| 서어나무  | 4    | -    | △4   |
| 거 제 수 | 48   | 48   | -    |
| 신갈나무  | 109  | 93   | △16  |
| 상수리   | 125  | 53   | △72  |
| 굴참나무  | 109  | 5    | △104 |
| 졸참나무  | 110  | 32   | △78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
## ◦ 수종별(민유림)

(단위 : 본)

| 구 분   | 2002 | 2003 | 증△감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합 계   | 410  | 188  | △222 |
| 가래나무  | 23   | 12   | △11  |
| 박달나무  | 34   | 31   | △3   |
| 물오리나무 | 1    | -    | △1   |
| 달피나무  | 6    | 6    | -    |
| 찰피나무  | 1    | 1    | -    |
| 풀푸레나무 | 1    | -    | △1   |
| 거제수   | 8    | 8    | -    |
| 신갈나무  | 51   | 44   | △7   |
| 상수리   | 125  | 52   | △73  |
| 굴참나무  | 79   | 5    | △74  |
| 졸참나무  | 81   | 29   | △52  |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
〈참고 5〉

## 채수포 현황

## ○ 기관별

(단위 : ha, 본)

| 구 분 | 2002   |       | 2003   |       | 증 △ 감 |   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    | 면적     | 본수    | 면적     | 본수    | 면적    | 본수 |
| 계   | 17.935 | 7,639 | 17.935 | 7,639 | -     | -  |
| 경기  | 2.31   | 925   | 2.31   | 925   | -     | -  |
| 강원  | 1.0    | 392   | 1.0    | 392   | -     | -  |
| 충북  | 4.0    | 1,540 | 4.0    | 1,540 | -     | -  |
| 충남  | 0.08   | 600   | 0.08   | 600   | -     | -  |
| 전북  | 2.0    | 400   | 2.0    | 400   | -     | -  |
| 전남  | 3.32   | 1,260 | 3.32   | 1,260 | -     | -  |
| 경북  | 0.625  | 242   | 0.625  | 242   | -     | -  |
| 경남  | 4.6    | 2,280 | 4.6    | 2,280 | -     | -  |

## ○ 수종별

(단위 : ha, 본)

| 구 分    | 2002   |       | 2003   |       | 증 △ 감 |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       | 면적     | 본수    | 면적     | 본수    | 면적    | 본수 |
| 계      | 17.935 | 7,639 | 17.935 | 7,639 | -     | -  |
| 밤나무    | 17.855 | 7,039 | 17.855 | 7,039 | -     | -  |
| 현사시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| -  |
| 양황철    | 0.02   | 150   | 0.02   | 150   | -     | -  |
| 수원포플러  | 0.02   | 150   | 0.02   | 150   | -     | -  |
| 이태리포플러 | 0.04   | 300   | 0.04   | 300   | -     | -  |

〈참고 6〉

## 년도별 주체별 묘목생산 실적

(단위 : 천본)

| 주체별<br>년도별 | 계         | 마 을     | 임 협       | 도산림환경<br>연 구 소 | 양 협       | 기 타     | 지방산림<br>관리청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| 5,644,522 | 968,145 | 1,410,854 | 53,992         | 2,695,037 | 144,936 | 371,558     |
| 1973-1976  | 1,983,561 | 651,978 | 386,176   | 19,835         | 751,142   | 82,669  | 91,761      |
| '77        | 465,235   | 105,569 | 96,209    | 3,939          | 210,763   | 17,355  | 31,400      |
| '78        | 319,916   | 64,727  | 75,080    |                | 148,975   | 12,285  | 18,849      |
| '79        | 308,300   | 72,792  | 66,066    | 6,451          | 133,594   | 10,305  | 19,092      |
| '80        | 266,806   | 39,020  | 72,279    | 5,283          | 131,910   | 202     | 18,112      |
| '81        | 256,751   | 23,700  | 75,548    | 2,772          | 137,592   | 293     | 16,846      |
| '82        | 236,496   | 6,359   | 81,458    | 2,458          | 132,074   | 519     | 13,628      |
| '83        | 166,815   | 2,286   | 61,782    | 1,845          | 89,886    | 920     | 10,096      |
| '84        | 147,210   | 389     | 51,258    | 1,054          | 84,677    | 3,877   | 5,955       |
| '85        | 157,429   | 358     | 59,513    | 1,166          | 86,280    | 4,000   | 6,112       |
| '86        | 177,626   | 180     | 85,404    | 1,299          | 81,721    | 4,209   | 4,813       |
| '87        | 137,586   | 177     | 54,629    | 914            | 75,729    | 1,763   | 4,374       |
| '88        | 108,612   | 113     | 43,573    | 924            | 58,994    | 1,430   | 3,578       |
| '89        | 86,591    | 75      | 36,011    | 970            | 45,386    | 440     | 3,709       |
| '90        | 86,431    | 5       | 35,173    | 702            | 44,378    | 1,347   | 4,826       |
| '91        | 90,584    | 38      | 34,124    | 981            | 42,767    | 1,252   | 11,422      |
| '92        | 83,175    | 151     | 28,562    | 402            | 40,294    | 572     | 13,194      |
| '93        | 75,978    | 180     | 22,752    | 413            | 41,509    | 325     | 10,799      |
| '94        | 64,134    | 48      | 14,474    | 280            | 38,287    | 561     | 10,484      |
| '95        | 61,882    |         | 10,145    | 344            | 41,120    | 392     | 9,881       |
| '96        | 54,835    |         | 8,156     | 784            | 36,603    | 194     | 9,098       |
| '97        | 50,028    |         | 3,634     | 372            | 35,756    | 26      | 10,240      |
| '98        | 45,142    |         | 3,372     | 42             | 33,159    |         | 8,569       |
| '99        | 37,648    |         | 1,503     | 22             | 30,211    |         | 5,912       |
| 2000       | 38,656    |         | 1,328     | 67             | 29,729    |         | 7,532       |
| 2001       | 30,687    |         | 203       | 6              | 24,146    |         | 6,332       |
| 2002       | 52,506    |         | 1,129     | 377            | 42,829    |         | 8,171       |
| 2003       | 53,902    |         | 1,313     | 290            | 45,526    |         | 6,773       |